

판 결

사 건 [REDACTED] 건물인도

[REDACTED] 보증금반환

원고(반소피고)

[REDACTED]

피고(반소원고)

[REDACTE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유

담당변호사 조효동

변 론 종 결

[REDACTED]

판 결 선 고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8,234,74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1) 기재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반소원고)에게 8,234,740원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주위적 본소청구, 나머지 예비적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

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그 1/2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
고)가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